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4

2023.07.03.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장태용 의원 외 37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23.7.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장태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함(안 제8조제5항).

○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6항 신설).

○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제10조).

○ 위원회의 정기 · 수시 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회 운영에 관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15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상설위원회로서 필요성이 감소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화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개요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 노무제공자・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외래치료・검진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을 보전하고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서울시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2019. 1. 3.)해 노동약자의 건강권과 생계보장권 보호사업을 시행(2019. 6.)하였으며, 2023년에는 사업명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함.

< 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지원금액 : 1일 8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 지원일수 :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사업목표 : 5,500명
◦ 소요예산 : 4,395,971천원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은 2022년까지 총 2만 4천여명이 신청하여, 2만여명에게 100억여원이 지급됨.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추진실적 >

구분	신청건수	지급건수	지급액(백만원)	1인 평균 지급액(천원)
합계	24,244	20,382	10,079	494
2019년	4,345	2,675	1,128	421
2020년	8,622	8,061	3,494	433
2021년	5,201	4,580	2,552	557
2022년	6,076	5,066	2,905	573

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

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비상설화 등(안 제8조제6항 등)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서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등의 상설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신 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삭 제>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삭 제>
③ (생략)	③ (생략)

○ 위원회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계획,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구성(2019. 3.)됨.

- 주요 심의·자문사항은 ▸지원계획 ▸지침 개발과 개정 ▸보건소장이 의뢰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이의신청, 검토의견서 ▸그 밖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임.

○ 그러나 2022년 회의를 1회 개최하여, ‘2023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계획’(2023.3.31.)에 따라 비상설화[1]를 추진하게 됨.

< 2023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

구 분		위 원 회 명		
비상설 (27)	조례 개정 (17)	창업정책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DMC기획위원회,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서울형유급병가지원자문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법령 건의 (10)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공동구협의회, 산지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폐지 (8)	조례 개정	희망경제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서울시수소산업육성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시민행복위원회,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통합 (38→8)	조례 개정	· 인권	3 → 1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 인권위원회로 통합
		· 버스	2 → 1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 → 버스정책시민위원회로 통합
		· 급식	2 → 1	·공공급식위원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공공급식위원회로 통합
		· 성평등	3 → 1	·성평등위원회, 성별임금격차위원회,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회 → 성평등위원회로 통합
		· 노동자권익	3 → 1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로 통합
		·미래사회연구	2 →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인구변화대응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통합
		· 기업	2 → 1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유망중소기업인증 정책위원회 → 기업지원위원회(명칭변경, 가칭) 통합
		· 기금	21 → 1	·21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서울시 기금총괄심의위원회(명칭변경, 가칭)로 통합

1)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2022년 1년간 1회 이하 또는 3년간 3회 이하)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함.

○ 또한,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상설위원회 관련 규정인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규정을 삭제함.

- 현행 조례는 위원의 임기를 2년(2차례 연임 가능)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이라도 조례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반기별로 정기회의(연 2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지원범위, 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수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이 안정화되어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 적어짐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지속될 필요성이 줄었고, 비상설로 운영하게 됨.

< 연도별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최실적	8회	3회	4회	1회

⑵ 위원회 실무담당자 규정 정비(안 제8조제5항)

○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기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부서장을 간사로 담당팀장을 서기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한다.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중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국장 또는 과장 등을 간사로 둔 경우에는, 해당 국이나 과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해야 함.

○ 이에 따라, 간사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부서장’에서 ‘노동정책 담당관’으로 구체화하고, 서기로 두도록 한 ‘담당팀장’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직위이므로 삭제하게 됨.

⑶ 위원회 운영세칙 정비(안 제13조)

○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변경함(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세칙)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이는 개별 조례와 위원회마다 운영규정이 상이하여 위원회 운영에 혼란이 있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개별조례를 재개정[2]해야 하는 입법적 낭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임.

---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유급병가지원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따라 상시적인 자문기구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의의가 있음.

○ 다만, 2023년부터 사업명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와 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태용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14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 : 장태용,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ㆍ석, 박춘선, 서상열,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숙자, 이종배, 이종환,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홍국표, 황철규 의원(38명)

1. 제안이유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함(안 제8조제5항).

나.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제10조).

라. 위원회의 정기ㆍ수시 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마. 위원회 운영에 관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참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동정책 담당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부서장을 간사로 담당팀장을 서기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신 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제12조 (생 략)	제9조·제10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삭 제>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세칙)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제17조 (생 략)	제14조·제15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